

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

2023. 06. 07.

**STUDIO
Dragon**

제정 2022. 05. 11.

개정 2023. 06. 07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,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직무와 권한, 기능)

- ① 위원회는 회사가 지속가능경영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.
- ② 본 규정에서 “지속가능경영”이란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(Environment)·사회(Social)·지배구조(Governance) 등에 대해 회사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,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회사 경영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며,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제반 경영 활동을 말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검토·분석하여,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방향성을 제시·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평가·검토하여,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로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- ③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⑤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일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(전자문서 포함)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9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
- ②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논의
- ③ 지속가능경영 활동 관련 이행 사항 심의
- ④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 10 조 (관계인의 출석, 자료제출 요구권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,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진술 취, 현장 실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.

제 11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그 다음날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3 조 (지원부서)

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.

제 14 조 (규정의 개폐)

본 규정의 제정·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2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본 규정은 2023년 06월 07일부터 시행한다.